

# 우주활동 감독에 관한 조약상 의무의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방향 연구

Study on domestic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  
regarding governmental supervision about national space activities

신 홍 균 (Shin, hong kyun)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  
Prof. Dr. Hankuk Aviation University,  
Dept. of Air and Space law

- I. 국가 우주활동 감독의무의 법원 및 내용
- II. 해외 국가의 입법 사례
- III. 입법 방향
- IV. 결어

우주 개발의 초기부터 진행되어 온 여러 관습법 및 조약법상의 국제법상의 의무를 국가 기관 및 비정부 기관이 이행하는 것을 감독하고 담보하기 위한 국가 감독의무를 우주 발사장을 운영하게 될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구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단계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법상의 우주활동에 관한 국가 감독 의무의 성립 및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 보고, 적절한 국내 이행을 위한 입법 방향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 I. 국가 우주활동 감독의무의 법원 및 내용

### 1. 1967년 우주조약에 따른 감독 의무의 성립

1967년 "달과천체행성을포함함외기권의이용에관한국제협약"(이하 "우주조약"이 라 칭함) 제6조는 국가가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관에 의한 우주활동이 본 조약을 준수하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국제 책임을 부담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약의 체결국은 자국의 비 정부 기관에 의한 우주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허가 및 지속적으로 감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독 의무는 비 정부기관에 의한 우주활동이 본 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동 조약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내용에 따라서 감독하여야 할 사항은 체결국 정부가 국제 조약상 의무의 이행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사항과 그 중에서도 체결국의 비 정부기관이 부담해야 할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체결국이 조약상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비정부기관에 대한 감독 의무

#### 가. 관할권의 성립

현재의 실정 국제법상 항공법이 적용되는 공간과 우주법이 적용되는 공간이 구분되어 그 적용 영역이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물체의 활동의 목적에 따라서 항공법, 아니면 우주법이 적용된다는 이른바 기능주의가 도입되어 있다. 그 결과, 우주 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행물체는 우주물체(space object)로 간주되고, 그

우주물체는 타국의 영공 내지는 상공을 비행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

이것이 우주항행의 자유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우주법은 기존의 영공 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국제법상의 관할권 이론과 상충될 소지를 안고 있어 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우주 공간은 무주물(res nullis) 내지는 공동의 소유(res communim)이라고 간주하면서 우주공간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현대 항공우주법의 원칙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관할권이 그러한 공간에서 주장된다면 이 역시 기존의 국제법상의 관할권 시각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된다.

먼저, 타국 상공에서의 우주물체의 비행의 경우, 현재까지 우주항행의 자유 원칙은 그 타당성을 잃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습법상의 원칙으로 출발하여 1967년 우주조약에서 성문화된 이래, 아직까지 우주물체의 상공 비행에 대한 국가간 분쟁이나 이의 제기는 없었으며, 따라서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주항행의 자유는 1944년 국제민간항공조약에서 확립하고 있는 영공 주권의 원칙 및 각종 비행의 자유 원칙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sup>

반면에, 우주공간상의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의 성립은 우주법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 제8조는 자국 국적으로 등록된 우주물체 및 그 물체에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 국적 국가가 관할권 및 통제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다. 우주 공간의 영유 금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조항은 우주 공간 자체에 대한 관할권이 아니라, 우주물체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에 본 조항상의 “통제권”(control)의 개념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먼저, 공해상 선박에 대한 관할권 및 통제권의 개념과 비교하여 볼 때, 1958년 공해 조약제5조는 “선박상에서의 행정적, 기술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등록 국가가 관할권 및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본 우주조약 제8조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사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 조항은 관할권과 통제권의 행사라는 방식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권한이 행사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sup>2)</sup>

즉, 우주물체에 탑승한 인원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사법적인 조치도

1) 다만 영공주권의 원칙은 조약에 규정된 반면에, 우주비행의 자유원칙은 관습법 원칙이라는 점, 그리고 우주공간의 경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영공주권의 종적인 한계와 상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는 있다는 점에서 차이는 인정되어야 한다.

2) "Sovereignty and the law of outer space re-examined", Stephen Gorove, *Annals of Air & Space Law*, 1977, pp 316-317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주선의 선장(또는 기장)은 탑승 인원의 형사상 범죄 행위에 대해서 행정적 처분 내지는 사법적 처분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관할권 및 통제권의 행사 범위는 국내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다.

#### 나. 관할권의 행사 범위와 방식

미국의 경우, 형법 및 형사 절차법은 우주물체에서의 미국 국내법의 관할권의 행사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 법령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권은 “우주에서 비행이나 항행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설계된 수송체로서 미국이 등록 국가로 된 경우, 그 수송체의 비행중”에 적용된다. 여기서 “비행 중”의 의미는 “지상에서 탑승 후 모든 외부 문이 닫힌 순간부터 하기를 위해서 그 문들이 지상에서 열린 순간까지로서 관할 당국이 그 수송체,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순간”까지로 정의된다.

항공기상에서의 범죄 행위의 역지를 위한 1966년 동경 협약이 이와 유사한 “비행 중”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비행 중에는 당해 항공기 기장이 범죄 행위자에 대한 구금권 등의 권한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본 협약은 국가간 협정에 의한 것인 반면에, 아직 우주물체상에서의 관할권과 통제권에 대해서는 국제 협약이 없고, 국내법상의 규정만이 있다.

#### 다. 우주물체의 등록과 관할권 설정

앞에서 본 미국 국내법에 따른다면, 우주물체에 탑승한 인원의 국적에 상관없이 그에 탑승한 자는 누구든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게 된다. 두번째 중요한 사항은 미국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근거는 그 우주물체가 미국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선박이라던가 항공기의 경우, 그 관할권의 부여에 대해서는 약간씩의 조건상의 차이가 있다. 선박의 경우, 등록 국가의 관할권이 인정되되 등록 국가가 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통제를 행하여야 한다는 일정한 조건이 설정되어 있다. 항공기의 경우, 1944년 시카고 조약은 등록 국가가 그 항공기의 국적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우주조약 제8조와 유사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미국 국내법은 단순히 등록만에 의해서 관할권이 행사된다는 것을 실체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3. 감독 의무의 내용

#### 가. 전 국가를 위한 우주이용의 원칙

우주조약 제1조는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shall be carried out for the benefit and in the interests of all countries, ... , and shall be the province of all mankind."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의 규범 창설력 및 구속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우주공간 자체가 아니라 우주의 탐사와 이용이 province of all mankind라고 규정하기에, 우주공간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가 체약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 특히 그 점에 기초해서 미국 정부는 본 조항을 비자기집행적(non self-executing)이라고 비준 과정에서 밝혔다는 점 등이 그러한 논란의 핵심이었다.

Marcoff 교수를 비롯한 우주법의 초기 연구자들은, 이념적 논의의 차원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 국가를 위한 이용원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우주비행의 자유원칙이 부여된다는 논리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우주공간은 공해와 영공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법제도의 취지가 보다 초국가적인 것이라는 입장 등이다.

반면에, 그러한 이론적이지 다분히 이념적이고 국제공동체를 지향하는 이상적인 입장과는 달리, 우주의 이용 활동은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다. 예컨대, 이미 1963년부터 미국 기업에 의한 위성통신서비스가 개시되어서, 우주이용의 혜택은 누구나 받은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자만이 받는 것이라는 관행이 성립된 것이다. 또한, 1979년 달 조약 이후 단 한건의 국제조약, 협의도 없이, 각국의 국내법, 기업 상거래에 의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중요한 현실이다.

우주의 상업적 이용의 개시, 즉 기업에 의한 우주이용의 개시는 우주법의 기본적 원칙들의 이행방식의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모든 국가가 우주이용의 혜택을 누리야 한다는 원칙은 이른바, "Equal Subscription Rights to Services"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대체되었다. 달리 말하면, 실질적인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라는 자본주의적 평등 개념에 기초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가 혜택을 누리는 체제에서 우주이용의 혜택 원칙이 해석, 적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법률 주체의 변동으로 이어졌다. 우주활동의 법률적 주체가 국제기구가 아닌 다국적 기업으로 변동, 내지는 확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이행방식의 변화로 볼 것인지, 아니면 원칙자체의 변화 내지

는 원칙의 적용범위의 축소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 나. 주권에 의한 영유금지 원칙

우주조약 제2조는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조항은 우주공간의 비영유에 관한 기본 원칙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국제공법 규범의 수립의 의의를 갖는다. 국가의 주권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공법 차원에서 별도의 입법 조치없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고려하거나, 주권 행사시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속한다. 다만, 공법 차원이 아니라, 사법 차원에서의 물권(부동산에 대한 것 등) 내지는 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이 인정될 수 없도록 입법 조치를 국가가 담보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판단된다.

#### 다. 국가감독 및 책임 원칙

우주조약 제6조는 "States Parties to the Treaty shall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 ... for assuring that n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present Treaty.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outer space, ... shall requir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by the appropriate State Party to the Treaty."라고 규정하여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국제 책임 원칙 및 비정부 기관에 의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원칙을 성문화하고 있다.

국제공법차원의 의무로서 국가의 우주활동에 대해서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성문화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의무가 본 조항에 의해서 창설된 것이기는 하나, "national activities in outer space"의 개념에 대한 논란이 크므로, 의무의 이행 방식, 범위 등의 설정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미국, 영국, 스웨덴, 일본 등의 입법 조치들을 이 조항의 이행으로서 볼 수도 있으나, 직접적인 의무의 이행이라기 보다는 국가 고유의 질서유지, 경제정책 차원에서 요구된 입법 조치라고 볼 수도 있다.

## II. 해외 국가의 입법 사례

### 1. 우주발사체 발사의 인,허가 제도

#### 가. 미국 발사 관련 법령

- 미국내에서 발사장을 운용하거나 발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sup>3)</sup> 발사하고자 하는 우주물체, 즉 발사체에 실리는 탑재체(payload)가 미국 법령에 따른 모든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한다.<sup>4)</sup> 아울러, 발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sup>5)</sup> 또한, 발사서

- 
- 3) □ § 70104. Restrictions on Launches and Operations  
 (a) License requirement. A license issued or transferred under this chapter is required for the following:  
 (1) for a person to launch a launch vehicle or to operate a launch site in the United States.  
 (2) f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70102(1)(A) or (B) of this title) to launch a launch vehicle or to operate a launch site outside the United States.  
 (3) f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70102(1)(C) of this title) to launch a launch vehicle or to operate a launch site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outside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unless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foreign country providing that the government of the foreign country has jurisdiction over the launch or operation.  
 (4) f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70102(1)(C) of this title) to launch a launch vehicle or to operate a launch site in the territory of a foreign country if there is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 the foreign country providing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jurisdiction over the launch or operation.
- 4) (b) Compliance with payload requirements. The holder of a launch license under this chapter may launch a payload only if the payload complies with all requirements of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launching a payload.  
 (c) Preventing launches.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establish whether all required licenses, authorizations, and permits required for a payload have been obtained. If no license, authorization, or permit is required, the Secretary may prevent the launch if the Secretary decides the launch would jeopardize the public health and safety, safety of property, or national security or foreign policy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 5) § 70112. Liability Insurance and Financial Responsibility Requirements

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발사서비스를 구매하여 이용하는 자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sup>6)</sup> 미국 정부의

(a) General requirements.

- (1) When a license is issued or transferred under this chapter, the licensee or transferee shall obtain liability insurance or demonstrate financial responsibility in amounts to compensate for the maximum probable loss from claims by
    - (A) a third party for death,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or loss resulting from an activity carried out under the license; and
    - (B)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gainst a person for damage or loss to Government property resulting from an activity carried out under the license.
  - (2)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determine the amounts required under paragraph (1)(A) and (B) of this subsection, after consulting with the Administrator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the Secretary of the Air Force, and the heads of other appropriate executive agencies.
  - (3) For the total claims related to one launch, a licensee or transferee is not required to obtain insurance or demonstrate financial responsibility of more than
    - (A) (i) \$500,000,000 under paragraph (1)(A) of this subsection; or
    - (ii) \$100,000,000 under paragraph (1)(B) of this subsection; or
    - (B) the maximum liability insurance available on the world market at reasonable cost if the amount is less than the applicable amount in clause (A) of this paragraph.
  - (4) An insurance policy or demonstration of financial responsibility under this subsection shall protect the following, to the extent of their potential liability for involvement in launch services, at no cost to the Government:
    - (A) the Government.
    - (B) executive agencies and personne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of the Government.
    - (C) contractors, subcontractors, and customers of the licensee or transferee.
    - (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of the customer.
- 6) (b) Reciprocal waiver of claims.
- (1) A license issued or transferred under this chapter shall contain a provision requiring the licensee or transferee to make a reciprocal waiver of claims with its contractors, subcontractors, and customers, and contractors and

시설을 이용하여 발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무성 장관은 매년 심사하여야 한다.7)

subcontractors of the customers, involved in launch services under which each party to the waiver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property damage or loss it sustains, or for personal injury to, death of, or property damage or loss sustained by its own employees resulting from an activity carried out under the license.

- (2)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make, for the Government, executive agencies of the Government involved in launch services, an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involved in launch services, a reciprocal waiver of claims with the licensee or transferee, contractors, subcontractors, and customers of the licensee or transferee, and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of the customers, involved in launch services under which each party to the waiver agrees to be responsible for property damage or loss it sustains, or for personal injury to, death of, or property damage or loss sustained by its own employees resulting from an activity carried out under the license. The waiver applies only to the extent that claims are more than the amount of insurance or demonstration of financial responsibility required under subsection (a)(1)(B) of this section. After consulting with the Administrator and the Secretary of the Air Force,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may waive, for the Government and a department, agency, and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the right to recover damages for damage or loss to Government property to the extent insurance is not available because of a policy exclusion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decides is usual for the type of insurance involved.
- (c) Determination of maximum probable losses.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determine the maximum probable losses under subsection (a)(1)(A) and (B) of this section associated with an activity under a license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a licensee or transferee requires a determination and submits all information the Secretary requires. The Secretary shall amend the determination as warranted by new information
- 7) (d) Annual report.
- (1) Not later than November 15 of each year,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submit to the Committee on Commerce, Science, and Transportation of the Senate and the Committee on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 report on current determinations made under subsection (c) of this section related to all issued licenses and the reasons for the determinations.
- (2) Not later than May 15 of each year,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review the amounts specified in subsection (a)(3)(A) of this section and submit a report to Congress that contains proposed adjustments in the amounts to conform with changed liability expectations and availability of insurance on the world market. The proposed adjustment takes effect 30 days after a report is

## 나. 러시아

러시아는 우주상업활동에 대해서 허가제로 관리하면서, 상업용 우주물체의 연간발사계획을 국가안보 담당 부처와 우주개발 담당 부처가 협의하여 허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 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우주개발사업단법 제3장의 2는 우주개발사업단이 우주물체를 발사하거나, 타인의 우주물체를 위탁받아 발사하는 경우에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sup>8)</sup>

submitted.

- (e) Launches involving Government facilities and personnel. The Secretary of Transportation shall establish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for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 and other assurances necessary to protect the Government and its executive agencies and personnel from liability, death,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or loss as a result of a launch or operation of a launch site involving a facility or personnel of the Government. The Secretary may not relieve the Government of liability under this subsection for death, bodily injury, or property damage or loss resulting from the willful misconduct of the Government or its agents.
- (f) Collection and crediting payments. The head of a department, agency, or instrumentality of the Government shall collect a payment owed for damage or loss to Government property under its jurisdiction or control resulting from an activity carried out under a license issued or transferred under this chapter. The payment shall be credited to the current applicable appropriation, fund, or account of the department, agency, or instrumentality.

### 8) 第3章の2

人工衛星等の打上げによる損害の賠償措置

(保?契約の終結)

第24?の2 事業?は `人工衛星等の打上げにより他人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ために必要な金額を?保?することができる保?契約を締結していなければ `人工衛星等の打上げを行ってはならない。

2. 前項に規定する保?契約に係る保?金額は `被害者の保護等を?る?点から適切なものとなるよう `保?者の引受けの可能な額等を?酌して `主務大臣が定めるものとする。
3. 事業?が行う人工衛星等の打上げが第22?第1項第3 ?に規定する委託に?じて行うもの(以下「受託打上げ」という ?)であるときは `第1項に規定する保?契約は `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 `人工衛星等の打上げの委託者(以下「打上げ委託者」という ?)が `事業?に代わって `事業?のために締結することができる。

(受託打上げに?する特約)

## 2. 자원탐사 위성

미국은 자원탐사위성을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가제로 관리하고 있다.

- 민간 자원탐사위성시스템을 운용하려는 자는 미국 상무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sup>9)</sup>
- 상무성 장관은 민간 시스템을 허가함에 있어서, 국제적 의무, 국내 법규 및 국가 안보와의 부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sup>10)</sup>

第24?의3 事業?は`受託打上げに係る契約を打上げ委託者との間で締結するときは`主務大臣の認可を受けて`受託打上げにより受託打上げ?係者以外の者に損害が生じた場合における損害賠償の責任に`し`次に?ける?容の特約をすることができる。`

- (1) 事業?が受託打上げにより受託打上げ?係者以外の者に生じた損害を賠償する責めに任ずべき場合において`?該受託打上げに係る受託打上げ?係者も同一の損害について賠償の責めに任ずべきときは`事業?か?該受託打上げ?係者の損害賠償の責任の全部を負?するものとする`こと。`
- (2) 前?の場合において`その損害が受託打上げ?係者の故意により生じたものであるときは`事業?は`その者に?して求償?を有するものとする`こと。`
2. 前項において`受託打上げ?係者`とは`打上げ委託者?びに受託打上げに?係を有する者として事業?及び打上げ委託者が同項の特約において指定する者をいう。`
3. 事業?が第1項に規定する特約をするときは`前?第1項に規定する保?契約は`同項及び同?第3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打上げ委託者が`事業?に代わって`事業?のために締結するものとする`

9) SEC. 201. GENERAL LICENSING AUTHORITY.

(a) LICENSING AUTHORITY OF SECRETARY.—

- (1) In consultation with other appropriate United States Government agencies,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license private sector parties to operate private remote sensing space systems for such period as the Secretary may specify an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 (2) In the case of a private space system that is used for remote sensing and other purposes,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under this title shall be limited only to the remote sensing operations of such space system.

10) (b) COMPLIANCE WITH THE LAW, REGULATION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ATIONAL SECURITY.—No license shall be granted by the Secretary unless the Secretary determines in writing that the applicant will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y regulations issued pursuant to this Act, and any applicable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national security concerns of the United States.

(e) REQUIREMENT TO PROVIDE UNENHANCED DATA.—

- (1) The Secretary, in consultation with other appropriate United States Government

- 1986년 UN 결의안에 따라서 unenhanced data를 탐사를 받은 국가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sup>11)</sup>

---

agencies and pursuant to paragraph (2), shall designate in a license issued pursuant to this title any unenhanced data required to be provided by the licensee under section 202(b)(3).

- (2) The Secretary shall make a designation under paragraph (1) after determining that—
- (A) such data re-generated by a system for which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the development, fabrication, launch, or operations costs have been or will be directly fund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 (B) it is in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such data to be provided by the licensee consistent with section 202(b)(3), after considering the impact on the licensee and the importance of promoting widespread access to remote sensing data from United States and foreign systems.
- (3) A designation made by the Secretary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inconsistent with any contract or other arrangement entered into between a United States Government agency and the licensee.

11) SEC. 202. CONDITIONS FOR OPERATION.

- (a) LICENSE REQUIRED FOR OPERATION.—No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may, directly or through any subsidiary or affiliate, operate any private remote sensing space system without a license pursuant to section 201.
- (b) LICENSING REQUIREMENTS.—Any license issued pursuant to this title shall specify that the licensee shall comply with all of the requirements of this Act and shall—
- (1) operate the system in such manner as to preserve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6;
- (2) make available to the government of any country (including the United States) unenhanced data collected by the system concerning the territory under the jurisdiction of such government as soon as such data are available and on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 (3) make unenhanced data designated by the Secretary in the license pursuant to section 201(e)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1;
- (4) upon termination of operations under the license, make disposition of any satellites in space in a manner satisfactory to the President;

### 3. 우주에서의 재산권 인정

#### 가. 미국 사례

##### 발명 인정

미국은 1990년에 USC Title 35를 개정하면서, 우주에서의 발명에 관한 권리 제도를 수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를 받는 우주물체에서의 발명은 미국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외국의 우주물체에서 이루어진 발명이라도 당해 외국 정부와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의 영토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sup>12)</sup>

---

(5) furnish the Secretary with complete orbit and data collection characteristics of the system, and inform the Secretary immediately of any deviation; and

(6) notify the Secretary of any agreement the licensee intends to enter with a foreign nation, entity, or consortium involving foreign nations or entities.

12) INVENTIONS IN OUTER SPACE (Public Law 101-580 [S. 459]; November 15, 1990)

An Act to amend title 35, United States Code, with respect to the use of inventions in outer space.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 SECTION 1. INVENTIONS IN OUTER SPACE.

(a) In General. Chapter 10 of title 35, United States Code,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 following:

" 105. Inventions in outer space

"(a) Any invention made, used or sold in outer space on a space object or component thereof under the jurisdiction or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considered to be made, used or sold with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title, except with respect to any space object or component thereof that is specifically identified and otherwise provided for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a party, or with respect to any space object or component thereof that is carried on the registry of a foreign state in accordance

## 재산권 인정 및 조세법 적용

또한, 미국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우주물체에 대한 조종을 미국내에서 하는 경우에 그 물체에 탑재된 물체가 미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소득세법의 적용을 규정하면서, 재산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sup>13)</sup>

---

with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b) Any invention made, used or sold in outer space on a space object or component thereof that is carried on the registry of a foreign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shall be considered to be made, used or sold within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s of this title if specifically so agreed in an international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tate of registry.

13) 1.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the Investment Tax Credit, the Deduction for Depreciation, and the Income Source Rules with Respect to Property Used, and Services Performed, in Space.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pril 23 (Legislative Day, April 22), 1985, Mr. Downey of New York (for Himself and Mr. Nelson of Florida)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Space Investment Tax Equity Act of 1985".

### SEC. 2. INVESTMENT TAX CREDIT ALLOWED FOR CERTAIN PROPERTY USED IN SPACE.

(a)

In General.Paragraph (2) of section 48(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relating to property us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s amended by adding at the end thereof the following new subparagraph:

"(C) Treatment of certain property used in space.For purposes of subparagraph (A), in the case of property (or any interest therein) of a United States person, use of such property in space shall not be treated as use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j)

such property is a spacecraft which, while in space, is substantially controlled from 1 or more facilities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or

"(ii)

such property is used on a spacecraft in space while such spacecraft is so controlled.

#### 4. 우주물체의 국적 관리

미국 FCC는 외국 위성의 미 국내 시장진입에 관한 규제체도를 수립하면서, 미국 위성과 외국 위성의 국적을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규제체도가 채택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 ▶ Intelsat을 미국 기업의 경쟁 사업자를 고려하여, 자국 위성통신사업자를 지원해야겠다는 정책
- ▶ 미국과 해외 시장을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위성을 운용하는 것이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미국 사업자들의 요구 (즉, 해외 시장을 개방시켜달라는 요구)
- ▶ 미국을 향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발신되는 국제통신량의 규모가 워낙 커서, 미국 시장을 담은 경우, 사실상 비 미국 사업자는 국제통신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미국통신시장에의 진입 규제 방식으로 "상호주의"를 채택하면서, 상대방 국가가 통신시장을 개방하면 미국도 개방하겠다는 정책을 채택한 바 있음.
- ▶ 위성통신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면 해외 위성통신시장이 개방될 수 있다는 미국계 위성통신사업자(Hughes, Panamsat 등)들의 요구

미국의 경우, 통신시장의 개방에 있어서 통신 사업자의 국적이 아니라 통신위성의 국적에 초점을 두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 WTO회원국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내 위성통신시장 진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공표("presumption in favor of entry"); 이미 각 회원국들이 자국의 통신시장개방을 약속한 상태이므로, 미국 위성통신시장을 개방하여도 국제적 경쟁 구도의 확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 (WTO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종전의 ECO Test 제도를 유지)
- ▶ 미국을 시장으로 하는 위성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신청 방법 (기존의 위성 또는 계획 중인 위성 모두의 경우)
  - ① FCC의 processing round(사업권 공고에 따른 신청절차)에 미국 위성사업 신청자들과 함께 신청 : 이 때, 미국 위성 허가가 아닌, 지구국 허가를 신청함.
  - ② 특정 주파수/궤도에 대해서 미국 위성사업 신청자들과 함께 심사됨. 허가될 경우, 당해 위성과 접속하는 지구국 허가 형태로 허가가 발부됨.
- ▶ 비 미국 위성과 접속하는 지구국 허가 신청
  - ① 위성시스템 허가를 위한 상기의 절차와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음.

- ▶ 위성을 포함한 통신서비스 사업권 허가(법인의 설립 또는 지분 참여 등)는 다른 법령에 의함.

위와 같이 미국은 위성통신시장을 개방함에 있어서 미국 위성과 외국 위성의 국적을 구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의 기업들이 미국 FCC가 사업권 공고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 미국 국적의 위성으로서 사업권을 허가받아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은 외국 국적의 위성으로서 남고, FCC가 주는 사업권에 따른 허가는 지구국 허가만에 의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1967년 우주조약 및 우주물체 등록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서 위성의 국적 제도 및 그에 따른 책임제도를 고려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 III. 입법 방향

#### 1. 입법 체계상 고려

타 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에, 현행 법령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는 우주관련 협약상 의무의 국내이행을 위한 규정을 담음으로써 법령 체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발사허가, 우주활동에 대한 감독의무의 이행 등) 예컨대, 항공우주 산업개발촉진법은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새로이 제정하고자 하는 법은 기술의 연구, 개발과 그 성과물의 산업이용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여 법령 체계상의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제정하고자 하는 법안은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과 이를 활용한 우주공간의 이용 및 탐사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우주개발을 지원,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그 입법 목적이 우주공간의 이용 및 탐사를 위한 연구개발의 진흥에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적인 “항공우주산업(항공기·우주비행체·관련부속기기류·관련소재류를생산·제조·가공·조립·생산·개조·수리)의 지원·육성”에 입법목적의 두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 명확한 차별성이 확보될 수 있다.

## 2. 우주물체의 등록 제도

우주물체로 인한 피해의 발생시에 책임 국가를 판별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그 우주물체의 국적이므로, 국적 부여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선박이나 항공기의 경우와 달리 우주물체의 경우에 자국 정부에 그 우주물체를 등록함으로써 국적 부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어서, 우주물체의 등록제도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해외 국가의 경우, 우주물체의 등록 절차를 통해서 국적부여 효과를 갖도록 하거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사국가의 개념에 의해서 자국의 책임여부가 정해지도록 하거나, 또는 자국에서 발사되는 우주물체를 전제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그 우주물체에 대해서 자국의 관할권이 성립하는 것이 국제법상 당연하다고 보고, 그 관할권에 기초해서 적용되는 국내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또는 외국인, 외국 기업이 우주관련 사업(통신위성사업)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당해 우주물체의 국적은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규정하는 방식(미국)도 있다.

최근에는 발사서비스 제공 국가와 서비스 구매 국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사국가의 개념이 새로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논의 속에서 우주물체의 국적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

## 3. 우주물체 발사의 허가

주요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sup>14)</sup>

14) 발사에 관한 국가 감독의무는 다음의 국제 협약 조항에 따라 발생한다.

※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에 관한 협약

(제2조) 발사국은 자국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또는 비행중의 항공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지불할 절대적인 책임을 진다.

(제3조) 지구 표면 이외의 영역에서 발사국의 우주 물체 또는 동 우주 물체상의 인체 또는 재산이 타 발사국의 우주 물체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후자는 손해가 후자의 과실 또는 후자가 책임져야 할 사람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 달과기타천체를포함한외기권의탐색과이용에있어서의국가활동을규율하는규칙에관한조약 (1967년)

(제6조) 본 조약의 당사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그 활동을 정부기관이 행한 경우나 비정부 주체가 행한 경우를 막론하고, 그 활동에 관하여 그리고 본 조약에서 규정한 조항에 따라서 그 활동이 수행된 것을 보증함에 관하여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의 비정부 주체의 활동은 본 조약의 관계 당사

- 발사 행위를 규제할 것인가 아니면 일회성 발사 행위만이 아니라 발사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 자체를 규제할 것인가의 문제
- 발사 행위에 대한 규제의 정도와 범위의 문제
- 관할 부처의 설정 문제
- 제3자 피해발생시의 처리 문제

첫째, 발사 행위는 수반되는 위험의 규모, 국방상의 고려 요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상당한 정도의 주의와 전문성을 기울여야 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발사체의 개별 발사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자체에 대한 규제로서 사업자를 규제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개별 발사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 조항에서는 발사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발사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에 대한 규제(예컨대, 사업자의 자격 등)는 별도의 조항을 두어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발사행위는 시장에 의한, 행위자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에 의한 인위적 규제가 타당하다. 왜냐하면, 수반되는 위험 및 사고시의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큰 것이므로, 규제 비용 대비 편익면에서 정부에 의한 규제가 타당하다. 아울러, 발사행위자의 합리적 주의 수준보다 더 큰 주의와 노력 수준이 요구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정부에 의한 규제가 타당하다.

규제의 수준에 있어서는 인허가권자의 재량 범위가 넓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기에 재량 행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발사행위의 여러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에, 발사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인허가권자가 특정인에게만 그러한 권리를 인정, 부여하는 성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관할 부처의 설정에 있어서는, 발사장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주도하에 건설된다는 점, 현재 예상되는 발사행위의 주 목적이 연구개발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과학기술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국에 의한 허가와 계속적인 감독을 요한다.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어서 국제기구가 활동을 행한 경우에는, 본 조약에 의한 책임은 동 국제기구와 이 기구에 가입하고 있는 본 조약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7조)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물체를 발사하거나 또는 그 물체를 발사하여 궤도에 진입케한 본 조약의 각 당사국과 그 영역 또는 시설로부터 물체를 발사한 각 당사국은 지상, 공간 또는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있는 이러한 물체 또는 동 물체의 구성부분에 의하여 본 조약의 다른 당사국 또는 그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국제적 책임을 진다.

## IV. 결 어

과거 국제법적 기반에서 출발한 법 규범의 한 종류로서 직접적인 관련성은 희박하여 보이지만, 우주산업 개발에 도움이 되는 특수한 법 규범 체계로서 연구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부적 행위 규범은 국내법이나, 관행에 의하지만, 큰 테두리는 우주법 원칙들에 의해서 수립되었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우주법은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전문가들간의 논의 속에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우주법의 발전 동향과 내용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탐문과 점검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시장에서의 기업간 거래에 정부가 항상 역할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우주법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 태도도 지속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인식되어야 한다.

요컨대, 획기적 기술발전,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영공주권, 환경법 제도 등이 큰 변혁을 겪을 수 있음을 유의하면서, UN 및 선진국 등의 우주법 관련 논의를 주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초 록

1967년 우주조약에서 규정된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의 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행되는가에 대해서는 각국의 입법 사례에 따라 다르며, 아울러 그 의무의 강제력에 대한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다수의 국적 위성을 발사하고, 발사장을 곧 건설, 운용할 대한민국 정부는 그러한 감독 의무를 이제는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입법 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활동 주체들이 국제법을 포함한 1967년 우주조약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국제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 국가를 위한 우주 이용의 원칙, 우주공간의 비영유원칙, 및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및 책임 원칙 등이 준수하여야 할 국제협약상의 의무로 요약되며, 그 이행을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 입법 체계상, 기존의 타 법령과의 조화를 피하면서, 우주 발사체의 발사 허가 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Abstract

According to the dispositions of 1967 Space Treaty, the contracting states should assume legal obligation to assure an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with regard to the national space activities. Any space activities have to abide by the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specified obligations set by the Treaty. Among several treaty obligations,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to be borne by the state, and the liability principles are deemed as major outstanding obligations which the state should take into account. While nation's first launch site is to be operational in a few years, Korean government should assure that its national space activities, such as launching of space object, operation of satellites, etc. should be under governmental authorization and supervision. A legislative effort would be most desirable undertaking for this regard. Especially a specific legislation needs to be studied for with such authorization regime so that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the liability as to the launching of space object should be under the regulatory scheme. This study focuses upon the necessity of such legislation and proposes some major items and framework for the legislation

주제어 : 우주활동, 국제책임, 발사체, 국가 감독, 우주조약